

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

1 사업 개요

□ 지원 대상

- 청년*을 채용한 5인 이상** 비수도권 소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***

* (청년)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※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대 만39세)

**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**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**

*** 비수도권 지역 내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

※ 단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산업집적법')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'(이하 '중견기업법') 상 **중견기업**은 참여 가능함

□ 지원 요건

- **(정규직 채용)**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
 -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*한 경우(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)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
- **(최소고용유지기간)**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**6개월 이상** 고용 유지
- **(임금조건)**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,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
- **(기타)** 감원 방지, 최저임금 준수, 주 28시간 이상 근로 등

□ 지원 내용

- **(기업)신규채용** 청년 1인당 **1년간 최대 720만원** 지원
- **(청년)정규직 채용(전환)**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**2년간 최대 480만원** 지원
 - 고용유지 6개월·12개월·18개월·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원

○ (지원 한도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^{*}의 50%

*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

(예시) 평균 피보험자 수 8.3명 →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→ $9 \times 0.5 = 4.5$

→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

□ 지급 주기

○ 6개월(1회차,360만원) → 3개월(2회차,180만원) → 3개월(3회차,180만원)

* 청년은 6개월(120만원), 12개월(120만원), 18개월(120만원), 24개월(120만원)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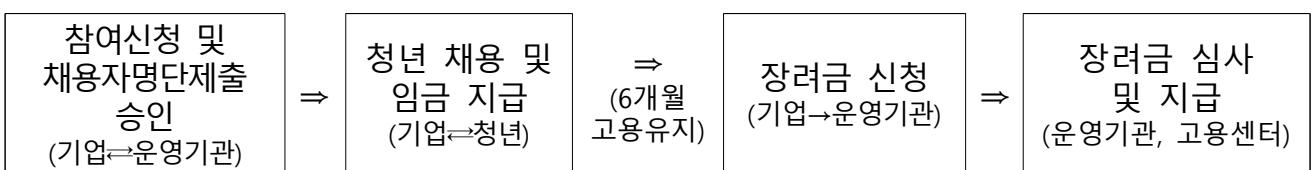
□ 참여 신청 : 2026년 01월 01일 이후 신규채용(정규직) 후 신청

*단,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,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

*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

□ 참여 방법 :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(광양상공회의소)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(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)

2 처리 절차



*자세한 내용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 참고 및 운영기관 문의 바랍니다.

□ 운영기관 : 광양상공회의소 061-761-5227